2023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사례집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차 례

Contents

List of Contents | 목차

Ⅰ 개 요 ········· 1

1.목적 및 추진 경과 ········· 2
2.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 4
3.업무 추진 프로세스 ········· 7
4.주요 점검 항목 ········· 8

Ⅱ 2023년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 9

1.유형별 지적사항 ········· 10
2.주요 위반사례 현황 ········· 13
3.2023년 산학협력단별 점검결과 ········· 22

Ⅰ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과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4. 주요 점검 항목

1. 목적 및 추진경과

가 목적

○ 추진 목적

-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규모 확대 및 기술사업화 등 업무 영역 다양화로 인한 현장의 회계처리 실태조사 강화 필요
- 산학협력단회계 예·결산 보고·공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으로 산학협력단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나 추진경과

○ 실태점검 추진경과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5개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대학 97개교, 전문대학 63개교, 원격대학 5개교 실시
- 2023년 점검 산학협력단은 대학 13개교, 전문 26개교, 원격 1개교로 총 40개 산학협력단을 점검함

< 연도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대학		전문		원격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사립	
‘17	3	4	-	3	-	10
‘18	2	4	1	3	-	10
‘19	4	4	-	6	1	15
‘20	6	11	2	5	1	25
‘21	6	16	-	2	1	25
‘22	4	20	-	15	1	40
‘23	1	12	-	26	1	40
계	**26**	**71**	**3**	**60**	**5**	**165**

○ ’23년도 실태점검 추진경과

내 용	일 정
준비단계('23년 3월~5월)	
'23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추진계획 교육부 안내	’23.03.30.
'23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실행계획 승인 통보	’23.04.24.
'23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안) 승인	’23.05.26.
'23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단 선정	’23.05.24.
수행단계('23년 6월~10월)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단 사전교육 실시	’23.06.03./06.12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서면 및 현장) 수행	’23.06.20.~10.27.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중간점검 수행 (총 3회)	’23.07.13/08.17/09.16.
종료단계('23년 11월~12월)	
실태점검 보고서 최종 검수회 개최	’23.11.10.~24.
대학재정자문위원회 개최	’23.12.15.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가 실태점검단 구성

○ 구성 방법

-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실태점검단 구성
- 총 20명의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9, 직무경력자 11) 선정
- 외부전문가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예ㆍ결산 및 감사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산학협력단 근무경력 또는 감사경력에 따라 가산점 부여

나 대상교 선정

○ 선정 방식

- 4개의 대상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각 산학협력단에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함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총계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 규모를 대ㆍ중ㆍ소로 분류하고 규모별로 균등하게 대상교를 선정함

단계	유형
1	인건비 비율
2	미보유 자산 사용료 수익 발생
3	간접비 비율
4	산학협력비 비율

< '23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현황 >

(단위 : 억 원)

연번	설 립	학 종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재정규모 유형	운영수익총계
1	사립	대학	계명대학교	대	492
2	사립	대학	대구대학교	대	401
3	사립	대학	동의대학교	대	275
4	사립	대학	우석대학교	대	236
5	사립	대학	수원대학교	대	224
6	사립	전문	대구보건대학교	중	149
7	사립	전문	동의과학대학교	중	149
8	사립	대학	성결대학교	중	142
9	사립	대학	협성대학교	중	108
10	사립	전문	오산대학교	중	97
11	사립	전문	수성대학교	중	79
12	사립	전문	마산대학교	중	75
13	사립	전문	전남과학대학교	중	74
14	사립	대학	영산대학교	중	71
15	사립	전문	연암대학교	중	70
16	사립	전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중	69
17	사립	전문	창원문성대학교	중	60
18	사립	전문	신성대학교	중	59
19	사립	전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중	55
20	사립	전문	혜전대학교	중	52
21	사립	전문	장안대학교	소	50
22	사립	전문	아주자동차대학	소	44
23	사립	전문	경북보건대학교	소	36
24	국립	대학	진주교육대학교	소	27
25	사립	전문	선린대학교	소	25
26	사립	대학(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소	24
27	사립	전문	포항대학교	소	23
28	사립	전문	부산경상대학교	소	22
29	사립	전문	고구려대학교	소	20

연번	설 립	학 종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재정규모 유형	운영수익총계
30	사립	전문	수원여자대학교	小	19
31	사립	전문	세경대학교	小	17
32	사립	전문	김해대학교	小	16
33	사립	대학	예원예술대학교	小	2
34	사립	대학(대학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小	2
35	사립	대학	서울한영대학교	小	1
36	사립	전문	백제예술대학교	小	0(548천원)
37	사립	전문	광양보건대학교	小	0(25,713천원)
38	사립	전문	진주보건대학교	小	0(10,056천원)
39	사립	원격	화신사이버대학교	小	0(15,455천원)
40	사립	전문	웅지세무대학교	小	0(19,919천원)

※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총계를 기준으로 대학규모를 구분 후 대규모 5개교, 중규모 15개교, 소규모 20개교 선정('22회계연도 결산 기준)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가 실태점검 프로세스

○ 업무 프로세스

1	2	3	4	5	6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태점검단 구성**	**점검대상 선정 및 안내**	**서면점검** (기관당 1일)	**현장점검 및 컨설팅** (기관당 2~4일)	**결과검수 및 보고**
3~4월	**3~5월**	**5~6월**	**6~10월**	**6~10월**	**11~12월**

○ 각 단계별 업무 추진 내용

단계	추진내용	세부 추진 내용
1	추진계획 수립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2	실태점검단 공모 및 구성	▸실태점검단 구성 계획 수립 ▸실태점검단 공모 접수 및 심사 ▸실태점검단 위원 확정
3	점검대상 선정 및 안내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최종 40개 산학협력단 선정 ▸40개 산학협력단에 실태점검 수행 통보 및 안내(서면/현장 점검 제출자료, 일정 등)
4	서면 실태점검 실시	▸산학협력단의 자체 점검표 및 제출 자료를 이용한 서면 실태점검 실시
5	현장 실태점검 실시	▸산학협력단 현장에서의 실태점검 실시 ▸산학협력단 규모에 따라 점검기간 구분
6	결과 검수 및 보고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산학협력단 별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대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표별 분석 및 비교 대상 그룹과 비교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4. 주요 점검 항목

가. 주요 점검 항목

○ 각 유형별 점검 항목

- 총 72개 점검항목으로 실태점검 실시

구 분	항목 수	주요 점검항목
Ⅰ. 예산 및 결산 일반사항		
1. 예산서의 작성 및 공개	6	▸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2. 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	2	▸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3. 계약 관한 사항	3	▸ 적법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체결 등
Ⅱ.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4. 자산	20	▸ 예금계좌 관리의 적정성(부외예금 존재여부 등) ▸ 타인 또는 타기관에 대여 또는 채무보증 여부 ▸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 학교기업 재고자산 관리의 적정성
5. 부채 및 기본금	6	▸ 임대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등
Ⅲ.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6. 수익	12	▸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 협약서 및 내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적절히 인식되었는지 여부
7. 비용	19	▸ 과제별 산학협력비 및 지원금사업비의 지출이 적절히 정산·보고되는지 여부 ▸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의 적정성
Ⅳ. 세무		
8. 세무	4	▸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합 계	**72**	

II

2023년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1. 유형별 지적사항
2. 주요 위반사례 현황
3. 2023년 사학기관별 점검결과

1. 유형별 지적사항

가 지적사항 유형별 구분

○ ’23년 실태점검 결과, 총 463건(평균 11.6건/점검교) 지적사항 확인

-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지적사항이 296건으로 가장 많음

구분	예·결산 일반사항	계약 관련	재무제표 작성 관련	세무 및 기타	합계
지적 건수	91건	20건	296건	56건	463

나 항목별 부적정 사례 건수

점검항목	지적 건수
[예산 및 결산 일반사항]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13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2
예산총계주의의 준수 여부	1
예산편성요령에 따른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	18
예산 전용 관련 규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3
예산 초과집행 여부	30
결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14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10
[계약체결 관련]	
(국가지원금 집행 시) 계약의 원칙 준수 여부	9
(국가지원금 집행시) 기타 계약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3
내부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준수 여부	8

점검항목	지적 건수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거래가 적절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1
다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을 협약비율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1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6
미수금 및 미수수익 인식의 적정성	7
보상금 지급기준 준수 여부	2
산학협력단 관리직원 인건비의 적절한 구분	1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9
선급금 및 선급비용 인식의 적정성	6
선수금과 선수수익 계정분류의 적정성	12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인식의 적정성	8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의 적정성	4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1
연구비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세입처리하는지 여부	10
연구수익 및 교육운영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는지 여부	11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수익 등 수익 세부구분의 적정성	11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의 적정성	5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4
연구활동비 회계처리 적정성	9
예금계좌 관리의 적정성(부외예금 존재여부 등)	11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26
운영외비용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적정성	4
유·무형자산 취득 지출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12
유·무형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4
유·무형자산 취득 후 지출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2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8
일반관리비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적정성	7
임대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9

점검항목	지적 건수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의 적정성	2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12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	13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7
학교기업 운영 관련 수익과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였는지 여부	3
학교기업 재고자산 관리의 적정성	1
학교회계전출금 인식의 적정성	2
협약서 및 내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적절히 인식되었는지 여부	8
확정채무의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누락 여부	10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2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12
감가상각비 인식의 적정성	2
교육운영비 세부과목 구분의 적정성	18
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적정성	1
기본금 인식의 적정성	1
기부금 수취 및 사용의 적정성	5
기술이전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5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지출의 적정성	1
[세무 및 기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7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	3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의 적정성	3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15
기타*	28*
합계	463

*회계 관리 시스템 미흡, 계정별 원장 작성 미흡, 학교총장의 산학협력단장 겸직 등

2. 주요 위반사례 현황

가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미준수

○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8일에 예산심의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022년 2월 21일 학교의 장이 확정함

나 예산편성요령 미작성

○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요령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재정 운용방향), 예산편성 지침,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B대학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및 공유하지 않음

다 예산의 초과 집행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에 의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 C대학 산학협력단은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라 결산 확정 법정기한 미준수

○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관상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D대학 학교의 장의 산학협력단 결산 확정일은 2023년 5월 18일로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처리되었음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관상의 심의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 E대학 산학협력단은 2023년 5월 15일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함

마 예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부적정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8조(부속명세서)에 의거 결산 시 잔액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하나,

- F대학 산학협력단은 선급금 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하나,

- G대학 산학협력단은 기한을 경과하여 2023년 3월 3일에 예산부속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바 구매 계약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금 집행 시 2천만원 이상 구매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 H대학 산학협력단은 물품 구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

○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비 관리운영 내규」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500만원 이상의 구매계약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중앙구매)을 하여야 함에도,

- I대학 산학협력단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구매하지 않고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

○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건물을 외부로 임대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J대학 산학협력단은 학교 건물을 드라마 촬영장소 등으로 10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임대료를 수령함

사 학교회계 귀속 수입 산학협력단 인식

○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에 따르면 대학 교비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K대학 산학협력단은 교비회계 건물을 입주업체에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을 산학협력단에서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함

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산학협력단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L대학 산학협력단은 성과 평가 없이 간접비의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한정하여 지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간접비 총액의 10 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M대학 산학협력단은 일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여 지급하였으며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자 연구활동비 지출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비를 지출할 때 적절한 증빙을 구비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N대학 산학협력단은 전문가 활용비로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나, 결의서와 이력사항만 있고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를 구비하지 않음

- O대학 산학협력단은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시 계좌이체를 제외한 모든 건에 대하여 담당자 등 개인카드 사용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운영함
- P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카드 집행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카드 사용 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결산시점에 세입처리 하지 않음
- Q대학 산학협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지출결의서만 있을 뿐 카드명세서를 포함하여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차 예수금 회계처리 오류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예수금 계정은 예수금, 제세예수금, 부가세예수금으로 구분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소득세, 4대보험료 등 제세 관련 일시적 예수금은 제세예수금으로 계상하며 그 외 일시적 제예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 R대학 산학협력단은 4대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3,885천원(산학협력단 : 3,773천원, 아동발달센터 : 112천원)을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카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오류

○ 특허 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 후 등록이 완료되면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고, 실패하면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나,

- S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등록이 실패하였음에도 선급금을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로 비용처리하지 않았으며,
- T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등록 시 선급금으로 계상한 출원비용은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등록비만 지식재산권으로 계상함

○ 특허권 양도 시 해당 지식재산권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U대학 산학협력단은 해당 계정과목을 제거하지 않음에 따라 지식재산권 장부금액이 과대계상되어 있음

○ 지식재산권 매각 또는 사용료 수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고 기준 내 집행이 되어야 하나,

- V대학 산학협력단은 내부규정에 정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기술료 순수익의 7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타 기말 확정 채권·채무 미인식

○ 결산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결산일 이후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관련 금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W대학 산학협력단은 소모품 구입비, 법인카드 사용액 중 결산일 이후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파 간접비 집행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5%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X대학 산학협력단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교육운영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Y대학 산학협력단은 대응자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집행함

하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등

○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 Z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를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음

가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등

○ 회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학협력단 회계직원으로 임명받은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AA대학 산학협력단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나 연구비 반납 시 회계처리 오류

○ 당기 이전에 종료된 연구과제에서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AB대학 산학협력단은 당기 이전에 종료된 연구과제 반납금액을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기의 연구수익에서 차감함

○ 당기에 연구수익으로 인식한 연구과제에서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AC대학 산학협력단은 당기에 연구수익으로 인식한 연구과제의 반납금액을 연구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함

3. '23년 산학협력단별 점검결과

※ **자료 참고시 유의사항 :** 학교별 부적정 사례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위반사항의 중대성을 대표하지 않으며 산학협력단 업무에 도움이 될 사례를 선별한 것임

1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교육용역 수익분류 오류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을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기타산학협력수익이 9,882천원 과대계상되고 교육운영수익이 동 금액만큼 과소 계상됨
노하우이전 수익 수익 일시 인식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으로부터 수취한 노하우이전수익 10,000천원은 전용실시권으로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부터 3년이나 수취시점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함
연구시설·장비비 분류 오류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에 재료비 및 시·제작품 제작 관련 경비를 7,300천원을 지출하면서 연구시설·장비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함

2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구매 계약 부적정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30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중앙구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일부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총 300만원 이상 (과제별 동일업체 및 동일지급일자)의 물품 구매 건에 대하여 분할구매를 통하여 개별 구매하였음
선수수익 과대계상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무상태표에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 중 '노사관계전문가육성' 사업비 42,000천원 등 총 18건, 328,316천원은 연구 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으로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 하여야 함에도,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오류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선급금 중 특허출원된 51건, 45,429천원을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취하 및 거절로 특허 등록에 실패한 88건, 58,973천원을 선급금에서 제거하지 않음

3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수수익 인식 누락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기예금 7건, 총 2,282,011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말결산 시에 정기예금의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 28,551천원을 인식하지 아니함
자본적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전용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비용 12,500천원 등 5건, 총 66,710천원을 기계기구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교육운영비로 회계처리함
적립금 운영부실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적립금 적립 및 예치 당시의 예·결산심의기구의 적립금 적립목적 사용용도 등이 명시된 회의록 등의 문서 부재로 인해 기타기금 161,618천원의 사용목적을 알 수 없음

4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일반관리비 계정 분류 오류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건비성 경비 총 7,263천원을 '일반관리비-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일반관리비-일반제경비'로 회계처리함
연구활동비 회계처리 오류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의 임차료 3,685천원을 연구시설장비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구활동비로 회계처리함
임대료 수익 인식 오류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석대학교 소유 건물을 대학과 별도의 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 절차 없이 '○○○' 등 총 27개 업체에 대해 임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10,600천원 및 임대료 55,656천원을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및 관리하고 있음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 상계 누락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결산 기준일의 부가세대급금 2,089천원과 부가세예수금 67,564천원을 상계하여 부가세예수금 65,475천원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하나, 상계하지 않음

5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결산 확정 및 제출 법정기한 미준수	산학협력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관 상의 심의기구(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 결산에 대하여 2023년 5월 23일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음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미수립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미수 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 원본과 직접 상계하여 대손처리 하고 있음)
감가상각비 인식 부적정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소멸(발명자의 퇴직 및 포기 등)된 지식재산권의 미상각잔액을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무형자산상각비로 회계처리하여 2022년도 무형자산상각비가 3,749천원 과대계상됨

6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계약 체결 부적정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원금 집행 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분할) 수의계약 체결함
선급비용의 과소계상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화재보험료 지급 시 보험기간('22.11.18.~'23.11.18.)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당기에 비용처리 하였음. 따라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시 2023회계연도('23.03.01.~'23.11.18.)에 귀속되는 보험료 943천원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음
선급금 과대계상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비용 관련 선급금으로 인식된 내역 중 출원심사 결과(특허 등록 또는 등록 실패)를 반영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총 37,002천원의 선급금이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 되지 않음

7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계약에 내부규정 미흡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구매와 관련하여 「동의과학대학교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문가 활용비 집행 부적정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신청서만 있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및 전문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내역서가 없는 상태에서 총 1,050천원의 비용이 집행되었음
교육운영비 계정과목 분류 오류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타지원금사업비 계정으로 지출하여야 할 '2022년도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활동비'를 '교육운영비-인건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2023년 공동훈련센터 업무총괄(담당)자 및 책임교수 수당 지급' 건은 인건비 계정이 아닌 '교육운영비-기타교육운영비'로 처리하였음

8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편성 요령 미작성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2023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및 공유하지 않음
재물조사 미실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계장치 66,678천원 및 집기비품 88천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익 미인식	산학협력단은 법인카드(연구비카드 등)의 투명한 사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을 결산 시 현금으로 환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마일리지 2,332천원을 결산 시점에 세입처리하지 않음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미비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간접비 재원인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43건 31,831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하였고, 회의록 등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지 않음

9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용 물품(갤럭시탭 외 3종)구입 등 자산 취득시 회계 계정과목을 연구활동비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비용처리 하였고, 물품 등록대장에 누락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음
민간과제 간접비 인식 부적정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지침」IV-7(간접비)에 따르면 간접비 규정이 없는 기관 및 사업의 경우 직접비의 10%를 간접비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연구과제 7건에 대하여 10% 이하의 간접비를 징수함
연구능률 성과급 성과 평가 부적정	협성대학교의「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지침」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간접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2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43건, 12,803천원) 성과 평가 없이 연구책임자에게만 지급하였음

10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수수익 과소 계상	오산대학교 산업협력단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2023년 11월 30일인 정기예금에 800,000천원을 예치(단기금융상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9,660천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위·수탁사업 관리 미흡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오산시(오산시장)와 산학협력단 간에 운영 위·수탁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4개의 센터 (위·수탁 사업 5개 중, 1개는 산학협력단 자체 회계처리)의 경우, 오산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산학협력단에서 각 센터에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함.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센터별 회계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기말시점에 기타지원금수익 및 기타 지원금사업비용으로 일괄 인식하여 상세 회계처리 내역을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음
계약 규정 미준수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LINC 3.0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된 외부용역 완료 후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규정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등에 의한 하자보증금(보증서)등을 수취하지 않고 검수담당자의 검수절차 없이 사업비를 담당하는 부서의 확인만으로 대금을 지급함

11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설정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수성대학교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고 있음. 한편 동 규칙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함
기부금 수취 계정과목 오류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취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舊 법정기부금)으로 판단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회계처리시 일반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예산편성 요령 미작성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및 공유하지 않음

12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지식재산권 회계처리 오류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시점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선급급과 무형자산이 누락됨
미지급 퇴직연금 인식 누락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하여 2023년 1월~2월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상당액 2,966천원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채무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임대수익 계정분류 오류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59,042천원을 '설비자산사용료수익-임대료수익'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설비자산사용료수익-기타사용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함

13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선급금 명세서 누락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표 상 선급금 잔액이 59,861천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부속명세서로 선급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유형자산 처분 및 폐기 처리 부적정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자재 240종 935개와 비품 54종 282개를 폐기함에 있어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불용자산(컴퓨터 114대, 모니터 115대)을 '○○전자제어'에 매각 후, 매각 대금 326천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수입처리 함
학교기업 운영 수익 및 비용 합산 부적정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무인항공교육원 및 바이오 365) 재무제표를 산학협력단 회계와 합산 시 산학협력단의 적정한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의 비용을 기타산학협력비 및 기타 지원금사업비 계정에 합산하였으며, 학교기업 기말재고자산 37,909천원을 기타산학협력비로 합산함

14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회수불가능 채권의 사후관리 미흡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 6,438천원에 대하여 제각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재물조사 관련 규정 미준수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에 대한 재물조사)제1항에 따르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기별로 실시하지 않음
투자자산 회계처리 오류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엑셀러레이터 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 주식 10,000천원, 주식회사 ○○○ 주식 10,000천원 총 20,000천원을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함

15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결산서 작성 미흡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표 상의 유형자산 금액(4,051,315천원)과 유무형자산 취득 명세서의 미상각잔액(4,097,003천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
간접비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를 재원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과 무관한 '학생식당 2층 라운지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비품 및 소모품 비용 53,520천원을 집기비품(36,509천원),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16,741천원) 계정과목으로 지출하였음. 또한, 「교원연구개발규정」제11조에 따라 해당과제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구과제 불인정 반납금액 491천원을 기타운영외비용 계정과목으로 지출하였음
일반관리비 계정 구분 오류	일반관리비는 간접비 이외의 수익(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지출이 가능한 계정과목이며,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간접비사업비로 계상해야 함.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를 재원으로 한 인건비 1,303천원 및 일반제경비 7,431천원을 간접비 사업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지출 처리함

16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계약 내부규정 미흡	국가·비국가과제 수행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과제 수행에 대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이 상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준하여 운영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구매·계약에 대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규정 부적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의 10% 이내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 보상금 지급규정」 상의 지급한도는 간접비 수주금액의 30%로 명시하고 있음
국가계약법 미준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추정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따른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주)○○○와 시설공사계약 체결시 사업비 분할 입금의 사유로 지하1층 공조실 공사(268,620천원)를 수의계약 체결함

17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지출내역 작성 오류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은 23,611천원이나, 실제 간접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25,554천원으로 1,943천원의 차이가 발생함
감가상각비 인식 부적정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내용연수: 4년)을 계속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한편,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 결산 상 무형자산상각비를 총 72,110천원 인식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12월에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 2022회계연도 12월에 취득한 것처럼 무형자산상각비를 인식하여 무형자산상각비가 총 4,335천원 인식되지 않음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3개 업체로부터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3,500천원을 수취하였으나, 특례기부금(舊법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함

18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구분관리 미흡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잔액 14,666천원)를 민간연구비 간접비와 구분 없이 연구간접경비 1개 통장(잔액 29,080천원)으로 통합관리 하고 있음
재물조사 결과 결산 미반영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재물조사 대상으로 기계기구 2,340,888천원과 집기비품 773,932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와 통합으로 2년에 한번 정기적 재물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관련된 재물조사 결과를 회계에 즉시 반영하지 아니함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예수금 183,699천원(○○○ 소득세등 264건)을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또한, 부가세대급금 8,685천원과 부가세예수금 1,000천원을 상계하여 부가세대급금 7,685천원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하나, 상계하지 않음

1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선급금 회계처리 오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선납 전기요금 2,618천원을 미수금 계정과목이 아니라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함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익 미인식	산학협력단은 법인카드(연구비카드 등)의 투명한 사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을 결산 시 현금으로 환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마일리지 910천원을 결산시점에 세입처리 하지 않음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미가입	2022년 1월 1일부터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되었으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예산 또한 편성하지 않음

20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선급비용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령어린이급식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급 시 임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2023년 1월에 지급한 1년분(2023년 1월~ 12월) 임차료 6,000천원을 전액 당기에 비용처리 하였음. 따라서, 결산서 상 2023년 3월~12월에 해당하는 선지급 임차료 5,000천원이 선급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음
자산취득 회계처리 오류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당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령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컴퓨터, 태블릿PC 등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지원금사업비로 당기 비용 처리함
자산 폐기 부적정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불용물품을 폐기 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사유를 기재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내부절차 없이 본교 총무팀에서 실시한 자료만으로 산단 소유의 자산을 폐기처리하였음

21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누락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수익 15,146천원 및 간접비 사업비 10,673천원이 운영계산서상 존재함에도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 31,081천원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으나 충당부채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중앙구매 및 물품 검수 절차 미흡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 용역연구비 관리지침」 상 1회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중앙구매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 물품검수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구매 또는 기증받은 모든 물품의 검수 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장 및 학부(과)장이 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자가 자체 구매 후, 검수담당자의 서명 없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음
간접비 구분관리 미흡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1.1.시행)」제51조(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음

22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 인식 오류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교육장비 사용료를 수취하여,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을 113,354천원을 인식하였음. 상기 금액에는 학교 소유 자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와 산학협력단 자산이 구분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 소유 자산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수익 인식 기간귀속 오류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URI 지원사업'은 여러 기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세부 과제가 존재하나 산학협력단에서는 세부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147,810천원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147,810천원 중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과제도 비용만 인식하고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하지 않음
지식재산권 회계처리 오류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 104,443천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 중 103,177천원은 지식재산권 실시·양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1,266천원은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23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과제 간접비 징수 부적정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로 징수하여야 하지만,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총 계약금액 20,000천원)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약 39% 해당하는 7,841천원의 간접비를 징수하였음
자산취득 회계처리 오류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대학평가시스템 구축’, ‘학생역량개발시스템 구축’,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등 무형자산 인식 대상 자산을 기타교육운영비로 당기 비용처리 함
사업비 지출 부적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지원사업비를 대학홍보비, 행사비 및 선물구입비로 지출할 수 없으나,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실습방문 기념품비(2,989천원)를 사업비로 지출함

24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누락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수익 46,375천원 및 간접비 사업비 33,125천원, 간접비통장 잔액 130,396천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음
자산관리 부적정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등 자산성 물품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자산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사학재단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2년마다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를 수행한 이력이 없으며 손·망실 자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오류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8,581천원에서 당기 환입액 24,009천원 및 전입액 43,060천원을 반영하면 재무제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47,632천원이 되어야 하나 43,060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4,572천원의 차액이 발생함

25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계속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혁신지원단 사업에서 당해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학혁신지원단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교원 및 전담직원 6명에 대한 퇴직금 18,720천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구매 검수 절차 미흡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검수규정 제7조에 '물품구입결의액 3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의 발주금액 1,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통합하여 검수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2022회계연도에 Virtual Campus Cloud 및 Webex 연간사용권 구입 계약 등 총 6건에 대해 검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수익 인식 오류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수취시 마다 수익을 인식(현금주의 수익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용역과 관련된 간접비 수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음

26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수익 구분 오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여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산학협력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산학협력수익 2,060,261천원, 지원금수익 0원)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익 미인식	산학협력단은 법인카드(연구비카드 등)의 투명한 사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액을 결산 시 현금으로 환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결산 시점에 세입처리 하지 않음
원천징수 부적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인 '공유의 비극 사회적 딜레마의 멘탈모델의 관한 연구(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중 개인 소득성 경비(전문가활용비)를 지급시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관련 소득금액을 누락함

27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수수익 과소 계상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만기가 2023년 3월 13일인 정기예금 잔액이 160,000천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 2,476천원을 인식하지 않음
선급금 회계처리 오류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320,000천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교육운영비로 회계처리함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오류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혁신지원사업단 직원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납금액 8,327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계상함

28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재물조사 규정 미준수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유중인 집기비품 2,293,625천원의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부산경상대학교의 비품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품관리 규정 제 7조에 따르면, '년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대설정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대 설정되어 있음

29 고구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지급금 계상 누락	고구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2월 28일 이전 지급의무가 확정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1,363천원에 대하여 미지급금 계상을 누락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계상	고구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에 신고조정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389천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였으나, 2022년 회계연도에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상태표 상 인식하지 않음
소득세 신고 누락	고구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암태식수전용저수지 주변 경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외 3건과 관련하여 36,01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3,169천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지만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30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지급금 계상 누락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속기관인 화성시 매송노인보건센터의 2023년 2월 법인카드 사용액 3,205천원과 생활문화창작소의 전기요금 4,931천원이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퇴직급여 회계처리 오류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신한은행에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음. 2월말 결산시 퇴직금을 추계액 16,706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음
예산 확정 및 제출 법정기한 미준수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까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정관 상 심의기구(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하나,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8일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2022년 2월 21일 학교의 장이 확정함

31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내여비 지급규정 미준수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의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비용 중 교통비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가격정보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교육 관련 출장 14건(총 500천원) 대해서는 정액으로 30천원 또는 50천원을 지급하였음
물품 구매 규정 미준수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물품구매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후 구매하여야 하나, 간호학과 강의용 ZOOM 화상강의 아이디 구매 시 사전 승인 없이 교수 개인 카드로 선구매 후 사후정산 하였음 (1건, 총 1,222천원)
선수금과 선수수익의 계정 분류 오류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수령한 '2023년 1분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 운영보조금' 220,800천원 등 총 7건, 462,740천원을 용역이 진행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아닌 선수수익으로 계상함

32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 전용 절차 미준수	산학협력회계의 예산 전용시에는 예산통제부서에서 예산 전용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하는 등 적절한 내부절차에 따라 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함
간접비 지출 회계처리 오류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계정과목으로 지출하여야 할 사업단 협의회비 납부금 등을 '간접비 사업비-기타지원비-기타지원비'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함

33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지식재산권 재무제표 미인식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수, 방풍 및 투습이 가능한 기능성 한지의 제조방법' 등 총 25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에 지식재산권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정기적인 재물조사 미실시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계장치 768,375천원 및 집기비품 24,582천원, 기타유형자산 33,000천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에 총 6건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83천원의 연차등록료 및 수수료를 '간접비사업비-과학문화활동비' 계정과목으로 지출함. 상기 6건의 지식재산권은 등록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권리의 유지 및 포기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토 없이 연차등록료를 지출함

3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 확정 및 제출 법정기한 미준수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까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정관 상 심의기구(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23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 2월 21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음
간접비 구분관리 미흡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동아시아 불교의 육미체계연구'에서 발생한 간접비 750천원 등 총 3,712천원의 간접비를 수취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와 기타 민간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회의비 지출 증빙 미흡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7월 19일 회의비 70천원, 2022년 7월 27일 12천원, '22년 8월 3일 12.8천원 등 다수의 회의비를 지출하면서 참석자, 회의내용 등 연구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구비함

35 서울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수익 회계처리 오류	서울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조사연구사업 연구용역'에서 발생한 간접비 437천원을 간접비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함
연구활동비 계정과목 분류 오류	서울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조사연구사업 연구용역' 과제에서 발생한 책임연구원 인건비 6,754천원과 연구보조원 인건비 1,279천원을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산학협력비-산학협력 연구비-연구활동비'로 회계처리함

36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자산 폐기 부적정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 2월 28일 기준 기계기구 6,818,126천원 및 집기비품 707,505천원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었으나, 결산시점에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상기 금액 전체를 폐기로 회계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부가가치세 예수금 회계처리 오류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 4,545천원을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동 금액만큼 산학협력수익이 과대계상됨
연구활동비 정산 부적정	백제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각디자인 매뉴얼 연구'에 대한 연구 활동비로 43,088천원을 2022년 12월 27일 연구책임자에게 선지급하였으나, 연구과제 종료일(2023년 2월 17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구활동비 집행증빙을 제출받지 않음

37 광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지출내역서 미작성	산학협력단은 2022회계연도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수익 6,292천원 및 간접비사업비 지출이 1,399천원이 있었으나 별지 제4의7서식인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 및 공개하지 않음
수익 계정과목 구분 오류	광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연구에서 받은 간접비수익 3,500천원을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계상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에게 받은 건물관리비 4,395천원을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기타운영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
수익 인식 오류	광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산업체연구(과제명: 전남 소재·부품·뿌리산업 연구개발대행 원스톱지원사업, 수행기간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에 대해 연구 진행기준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70,000천원을 2022회계연도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66,500천원, '간접비수익-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 3,500천원으로 전액 인식함

38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총칙 작성 누락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구분되고, 예산총칙은 예산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에도,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예산편성시 예산총칙을 누락함
수익 인식 오류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수령한 현금 전체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기타지원금수익이 272,411천원 과대계상되고 동일한 금액만큼 선수수익이 과소계상됨
간접비 수익 미구분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 3,097,920천원을 수입처리하면서, 기타지원금수익(2,944,570천원)과 간접비수익(153,350천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기타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함

39 화신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임대수익 처리 부적정	화신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 소유의 기자재를 임대하며 발생한 소득 9,091천원을 학교로 전출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산학협력수익-설비자산사용료수익'계정으로 인식함
회계직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회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학협력단 회계직원으로 임명받은 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신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40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학교회계 전출금 회계처리 오류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 건물을 외부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11,843천원을 학교로 전출하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회계처리함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 건물을 드라마 촬영장소로 ㈜○○○ 등 10개 업체에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14,456천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함